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13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위성곤 · 조계원 · 이학영
윤준병 · 김기표 · 최혁진
정진욱 · 이개호 · 허영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가해자의 강압으로 경찰관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거부·기피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

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4제2항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온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강제 진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생략)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 ----- ----- ----- -----.
<u><단서 신설></u>	<u>다만,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온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강제 진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벌칙) ① (생략)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u>

제22조(과태료) ① <u>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③ (생략)	<u>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u> 제22조(과태료)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	--